
취약계층 통합위기지원사업
'또 하나의 가족'
사업신청안내

2026년

1. 사업개요

- 가. 사업명 :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을 지키는 취약계층 통합위기가정지원사업 '또 하나의 가족'
- 나. 사업기간 : 2026년 2월 ~ 2026년 12월 (예산 소진 시까지)
- 다. 신청기간 : 상시
- 라. 사업지역 : 전국
- 마. 사업대상 : 응급 위기에 직면하여 생계, 주거, 건강, 돌봄, 안전 등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위기가정

응급 위기에 직면한 취약계층 가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저소득 및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위기가정(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) - 갑작스러운 실직·질병·사고 등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정 - 긴급 통합 돌봄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 - 위기임산부 및 영아 또는 위기 한부모가정(경계선지능 한부모 등) - 자립준비청년 가구 ※ 기준중위소득 100% 이상이라도 지원 필요성, 심각성에 따라 사례회의를 통해 지원 가능
-----------------------	---

*2026년 기준중위소득 100%

가구원수	소득기준 (신청기준)	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		
		직장가입자	지역가입자	혼합
1인	2,564,238	85,040	19,780	-
2인	4,199,292	149,830	49,340	151,100
3인	5,359,036	191,210	100,810	193,100
4인	6,494,738	231,730	151,000	234,650
5인	7,556,719	269,620	178,350	273,020
6인	8,555,952	305,280	222,040	309,120

※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금액임.

(출처: 보건복지부, 국민건강보험공단)

2. 지원내용

- 가. 지원금액 : 가정당 최대 500만원 지원(항목 복수 지원 가능)
- 나. 지원영역(각 신청 영역에 해당하는 증빙 서류 제출 필수)

① **생계비** : 실직, 질병, 재해 등으로 인해 소득 중단 또는 급감하여 생계가 곤란한 가정

지원영역	·공공요금(가스/수도/전기), 관리비, 건강보험료 미납/체납금 ※비해당항목 : 전화요금, TV요금, 민간보험료
증빙서류	·미납고지서, 체납고지서 등 해당서류
비 고	·정부 및 타 단체 지원금 중복 수혜의 경우 해당분 차감 후 지급될 수 있음

② **주거비** : 임대료 체납, 재해, 퇴거, 주택 노후 등의 위기로 주거가 불안한 가정

지원영역	·월세 또는 월임대료, 임시주거비 ·개보수(하자보수, 화재복구, 자연재해로 인한 시설물파괴, 장판, 도배 등) ·주거환경개선비 (안전장치 설치 및 보수 외) ※ 비해당항목: 전월세보증금 및 대출이자, 가구 구입비, 이사비
증빙서류	·임대료 체납분 신청 시필수증빙서류 - 임대차계약서 - 체납고지서, 미납확인서, 퇴거통지서 등 해당서류

	<p>단, 미납확인서 양식 필요 시 홀트 사업담당자에게 본회 양식 요청할 수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임시주거비 신청 시 필수증빙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시거주지 관련 정보 및 비용이 명시된 해당서류 ·주거개보수 신청 시 추가 필수증빙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등기부등본(자가 증명) 및 임대차계약서 - 개보수 견적서 - 현재 상황 및 심각성을 파악할 수 있는 사진
비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주거개보수 가능 요건 : 자가주택, 무상임대(사용대차 확인서), 영구임대아파트 ·월세 또는 월임대료 체납분의 체납기간은 제한 없음. ·월세 또는 월임대료와 임시주거비의 향후 필요분을 신청할 경우 최대 6개월분까지 신청 가능함. ·체납분과 향후 필요분 동시에 신청 가능함·공공요금(가스/수도/전기), 관리비, 건강보험료 미납/체납금

③ **의료비** : 갑작스런 경제적 어려움으로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가정

지원영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아동 및 가족구성원, 자립준비청년의 검사, 치료, 수술, 약제, 입원, 재활치료를 위한 의료비 ·아동 및 가족구성원, 자립준비청년의 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비 <p>※ 비해당항목: 장애진단비, 간병비</p>
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의료비 신청시 필수증빙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단명,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의료기관 발급 서류 예) 진단서, 소견서, 치료계획서 등 - 의료비 미납영수증, 중간영수증, 향후 의료비 추정서 등 금액 명시된 서류 ·의료기기 및 보장구 구입 신청 시 필수증빙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의료기기 및 보장구 견적서

④ **심리치료비** : 가족이 처한 어려움으로 아동 및 가족구성원의 심리정서 치료가 필요한 가정

지원영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아동 및 가족구성원, 자립준비청년의 심리상담 및 치료비 ·장애 및 발달지연 아동의 언어·놀이·미술치료 등을 위한 비용
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필수증빙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진단명, 치료기간 등이 명시된 전문기관(병원, 심리상담센터 등) 발급 서류 예) 진단서, 소견서, 치료계획서 등 - 치료비 미납영수증, 중간영수증, 향후 치료비 추정서 등 금액 명시된 서류

⑤ **교육비** :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동에 대한 교육 관련 지원이 필요한 가정

지원영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교육활동지원비(방과후, 돌봄), 학원수강료, 학습교재, 인터넷강의 등 ·교육 시 필요한 물품구입비 (학습 책상, 의자, 교재, 교구 등) <p>※ 비해당항목: 게임기, 교육용 전자기기 구입</p>
증빙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아래 서류 중 지원신청항목에 해당하는 서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교육기관명, 교육기간 및 교육비가 명시된 서류

	예) 학원비 납부확인서, 학원비 안내문, 공식 홈페이지 가격안내 등 - 교육물품비용 견적서
비 고	·교육비 신청은 아동에 한하며, 긴급지원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가급적 상세히 기재

⑥ 기타 물품 지원

-업무담당자(사례관리자) 등의 현장 확인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가정

지원영역	·생필품, 양육물품 ※비해당항목 :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전자기기
증빙서류	·가정에 필요한 물품 목록

※ 제출서류

구 분	개인	기관
사업신청 공문	X	0
사업신청서		
① 사업신청서	0	0
② 경제적스트레스척도		
③ 개인정보제공및활용동의서		
사례관리기관사업자등록증	X (사용처의 사업자등록증)	0
통장사본	X (사용처의 통장사본)	0
주민등록등본(뒷자리표기)	0	0
가족관계증명서(상세)	0	0
소득증빙서류	0	0
지원항목별 증빙서류	0	0
보호종료확인서	자립준비청년의 경우	

- 사업신청서 : 신청대상에 맞는 양식을 선택하여 ①,②,③ 모두 작성
- 소득증빙서류 :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, 차상위계층증명서, 한부모 가족증명서,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중 해당사항 택 1 제출
- 지원항목별 증빙서류 : 각 신청영역에 해당하는 항목별 증빙서류 제출
- 발급서류 유효기간 :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, 소득증빙서류, 보호종료확인서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

다. 수행방법



*지원금 지급방식

- 사례관리기관 또는 수납기관 계좌에 직접 송금하여 지급하며, 현금 수령 불가
(※ 자립준비청년 대상자는 대상자계좌 직접 송금 또는 수납기관에 직접 송금)

*결과보고

- 내용 : 지원금 사용내역, 지원의 효과성에 대한 담당자 의견, 사업의 만족도 등
- 시기 : 지원 종결일로부터 2주 이내
- 제출서류 : 종결보고서, 지출증빙자료(영수증, 이체내역 등)

3. 신청방법

가. 개인 또는 사례관리기관을 통한 신청

나. 신청기간: 상시

다. 신청방법: 홀트아동복지회 이메일 발송

대구지부 : dg@holt.or.kr (문의 : 053-756-0183)

부산지부 : psholt@holt.or.kr (문의 : 051-468-4576)

인천지부 : incheon@holt.or.kr (문의 : 032-424-0145)

충청지부 : holtcj@holt.or.kr (문의 : 042-586-1983)

※ 사례관리기관 또는 대상자는 사업기간 동안 본 회와 긴밀한 행정업무 협조체계 필요

※ 지자체 및 타기관의 유사한 목적성을 가진 지원사업을 중복하여 지원받는 대상자는 지원불가하며, 선정 이후에 사실 확인될 경우 지원 중단 및 종결될 수 있음.

4. 선정방법

구분	방법	내용	
1차심사	서류평가 및 유선상담	-시급 및 심각성 : 위기상황의 시급성 및 심각성 -긍정변화정도 : 지원을 통한 삶의 긍정적 변화 또는 자립 기대 정도 -중복수혜성 : 지자체 및 타기관의 긴급지원혜택 중복수혜자 제외	※제출 서류는 각 가정에 처한 문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2차심사	사례회의	-지원의 시급성, 현실성, 효과성 등 평가 -보호자의 아동 양육의지에 대한 평가	
3차심사	가정실태조사	-가정실태조사(필요시 실시)	

※ 자주 하는 질문

Q. 저희 기관은 지원금수령이 불가해요, 통장이 없어요. (행정복지센터(주민센터), 드림스타트, 학교 등 공공기관의 경우)

A. 기관 특성상 신청 기관으로 받기 어려울 경우 본회에서 대상 수납기관/사용처(예. 의료기관, 임대인, 학원 등)으로 지원금 직접 송금이 가능합니다. 그 경우 대상 수납기관/사용처의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을 추가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. (월세 지원의 경우 임대인의 통장사본)

Q. 신청했다가 떨어졌을 때 다음 차수 재신청이 가능한가요?

A. 가능합니다.

Q. 이전에 지원받았는데 또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A. 년 1회 지원가능하므로 올해 지원받은 대상 가구가 아닌 경우 가능합니다.